고양 삼송택지개발지구 A-8블럭 I'PARK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이(고등학교:개교예정시기 16개월전까지)이행되지 않을 경우, 삼송택지내 학교설립은 불가피하게 지연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경기도 고양교육청에 문의)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본 주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다음 기간동안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주거전용면적 85㎡초 과 :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간 전매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30~16:30→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30~18:00→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주택과 - 27422호(2009. 12. 0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A-8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2~24층 7개동 총 6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대지면적 44,932.000㎡ 중 아파트 지분 43,732.000㎡, 근린생활시설 지분 1,200.000㎡)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총 610세대 [특별공급 18세대 포함(3자녀 특별공급)]

(단위 : 면적-㎡, 금액-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층별 구분	공급 세대 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차(10%) 계약시	2차(10%) 10.01.28	중도금 1차(10%) 10.05.28	2차(10%) 10.09.28	3차(10%) 11.02.28	4차(10%) 11.07.28	5차(10%) 11.10.28	6차(10%) 12.02.28	잔금(20%) (입주 지정일)	비고 구 주택형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민영주택	22293-01	2009000835 (01)	100.3400	100.3400	27.5514	127.8914	63.1810 (58.0041)	191.0724	67.5082	1층	5	212,598,995	206,401,005	419,0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83,800,000	127.8914
										2층	5	212,598,995	220,101,005	432,70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86,540,000	
										기준층	180	212,598,995	242,791,005	455,390,000	45,539,000	45,539,000	45,539,000	45,539,000	45,539,000	45,539,000	45,539,000	45,539,000	91,078,000	
	22293-02	2009000835 (02)	100.1000	100.1000	26.4191	126.5191	63.0299 (57.8653)	189.5490	67.3467	1층	5	212,090,394	206,909,606	419,0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83,800,000	126.5191
										2층	5	212,090,394	220,609,606	432,70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43,270,000	86,540,000	
										기준층	170	212,090,394	243,289,606	455,380,000	45,538,000	45,538,000	45,538,000	45,538,000	45,538,000	45,538,000	45,538,000	45,538,000	91,076,000	
	22293-03	2009000835 (03)	116.3500	116.3500	30.9313	147.2813	73.2619 (67.2590)	220.5432	78.2797	1층	3	246,520,950	239,579,050	486,10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97,220,000	147.2813
										2층	3	246,520,950	255,479,050	502,0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00,400,000	
										기준층	60	246,520,950	281,829,050	528,350,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105,670,000	
	22293-04	2009000835 (04)	116.4700	116.4700	30.1411	146.6111	73.3375 (67.3284)	219.9486	78.3604	1층	3	246,775,093	239,324,907	486,10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97,220,000	146.6111
										2층	3	246,775,093	255,224,907	502,0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00,400,000	
										기준층	60	246,775,093	281,574,907	528,350,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105,670,000	
	22293-05	2009000835 (05)	116.2200	116.2200	31.8086	148.0286	73.1800 (67.1839)	221.2086	78.1922	1층	3	246,245,392	239,854,608	486,10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48,610,000	97,220,000	148.0286
										2층	3	246,245,392	255,754,608	502,0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00,400,000	
										기준층	102	246,245,392	282,104,608	528,350,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52,835,000	105,670,000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 ·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의해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자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6항에 의거 전체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공급되며 당사 견본주택 내부에서 직접 접수를 통해 분양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입니다.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주택가격(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입주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은행지정 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발코니 샤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계약자 별도 계약 품목임)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3자녀 특별공급) : 2009. 12. 11 (10:00~14:00) / 당사 견본주택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 12. 11 (15:00)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1) 3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12. 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함.
•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3%범위 이내 [18세대]
• 청약예금 · 청약부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단,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외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 녀 수 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에 의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 비율로 다음과 같이 각각 공급함.
• 3자녀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등재
			2세대	5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 · 비속으로 구성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2)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100.3400	100.1000	116.3500	116.4700	116.2200	계
경기도	3	3	1	1	1	9
서울시	2	2	-	1	2	7
인천시	1	-	1	-	-	2
계	6	5	2	2	3	18

3)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납부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中 1통) • 주민등록초본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분리 세대 및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 분) •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대리인 신청시	• 상기 본인 신청 서류 일체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2. 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12. 08)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로 있되 해당지역에서의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포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전용면적 85㎡초 과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이 불가하나, 2009.4.1~2011.3.31까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함.
• 본 주택은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12. 08)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수도권 거주자(고양시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70%를 공급함
•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차액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1) 순위별 신청자격

순 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1순위	가점제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분
	추첨제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감점은 적용됨
	공통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된 분 (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전환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 청약가능) -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가점제/추첨제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는 가점제로 청약접수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공통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공통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3, 4항 관련)

구분(주거전용면적 기준)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 군지역
102㎡이 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 과 ~ 135㎡이 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신청자격	접수일자	거주구분	청약접수장소 / 시간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2009. 12. 11	경기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당사 견본주택 (10:00~14:00)	• 발표일시 : 2009. 12. 11 15:00 • 발표장소 : 당사 견본주택
1순위	2009. 12. 14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인터넷접수**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00~17:30	• 발표일시 : 2009. 12. 22 13:00 • 장소 : 당사 홈페이지 • 2009. 12. 22자 문화일보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2009. 12. 15			
3순위	2009. 12. 16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 (www.kbstar.com) • **접수시간** : 08:00 ~ 17:3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00 ~ 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3순위는 국민은행에서만 청약가능]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주거전용면적 변경 요건
 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주거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능 주거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②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주거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주거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세대주 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 대 주 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 대 주 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09. 12. 08)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고양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당해지역 1년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70%를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 및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는 30%,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 물량의 수도권 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3. 1 · 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4.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접수 은행 및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신청시 입력한 (또는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 점 항 목	가점상한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계	84	-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 하 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재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4. 감점 산정기준

구분	감 점 항 목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은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 관리대장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①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보유 특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10년 미만인 보유기간 전체가 무주택 기간이 아님)
 2)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 8. 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인터넷 청약 접수방법

구분	국민은행 (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	
이용방법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에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노약자 ·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3순위 청약방법 및 청약신청금
•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 ① 국민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 신설 → ② 통장계좌에 신청금액 예치 → ③ 인터넷뱅킹신청(공인인증서 발급) → ④ 국민은행사이버 청약지점(www.kbstar.com)에 접속하여 접수절차에 따라 청약신청
• 국민은행 창구접수자(노약자, 장애우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에 한함)

구 분	청약신청금	창구 청약자 신청금 납부방법
국민은행 본 · 지점	300만원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환불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이후(2009. 12. 23)부터 (평일 : 09:00 ~ 16:00,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
 [단, 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 계좌로 자동환불됨]
 - 환불시 구비서류
 ① 본인 · 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당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② 제3자 대리 환불시: 상기 서류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주택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 인감도장, 위임장
 - 제3순위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 · 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일반공급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 · 2순위는 각 주택형의 주거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주거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각 순위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거주(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자중 낙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도권 거주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 거주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선정방식도 위와 동일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공급호수의 20%의 범위 안에서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ARS 당첨확인서비스 이용방법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당첨사실 조회
	이용기간	▶2009. 12. 22 ~ 2009. 12. 31 (10일)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금융결제원(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2009. 12. 22 ~ 2009. 12. 31 (10일)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청약 신청시 SMS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9. 12. 22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 정당당첨자 : 2009. 12. 28 (월) ~ 2009. 12. 30 (수) (3일간) / 평일 09:30~16:00 (토/공휴일제외)
• 계약금 납입은 아래 기재된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당사 견본주택에서 직접 납부하여야 함.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요망(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함. 환불 이자는 없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국 민 은 행	401301-04-027692	현대산업개발(주)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여부 등)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초본 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1통) • 계약금(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제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2009. 12. 08)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가점제 당첨자의 경우 가점제 확인을 위해 계약시 상기구비서류 외 사업주체가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청약관련 예금 또한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 및 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등 신청자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가점제 1순위 당첨자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 이상(추첨제 1순위 당첨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예비당첨자 중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월
• 2012년 6월(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인정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세 포함)

구 분	주 택 형 (㎡) 100.3400	100.1000	116.3500	116.4700	116.2200	비 고
계약자부담	13,889,000	13,081,000	16,738,000	13,154,000	14,929,000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상기된 표의 해당금액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비용은 주택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확장세대의 기본품목을 감한 가격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위치별로 선택될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비용은 발코니 샤시금액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의 경우 건축공정이 40% 달한 이후에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고 (단,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단수의 제품을 제시할 수 있음)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2) 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 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3)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창호	목재문(문틀, 포켓도어포함,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재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등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바탕몰탈(대피공간), 재료분리대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만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석재, 비닐쉬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벽도장, 신발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침실붙박이장, 드레스룸(도어포함)등 가구류 일체,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정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이중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정도장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바디샤워기, 수전등), 샤워부스, 카운터선반, 코너선반, 욕실악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욕실스피커폰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 (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주방액정TV, 가스쿡탑,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빌트인냉장냉동고, 음식물탈수기, 주방가전일체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욕실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주 택 형 (㎡) 100.3400	100.1000	116.3500	116.4700	116.2200	비 고
기본선택 (마이너스옵션)	23,960,459	23,703,359	27,195,498	27,071,745	27,333,487	
상기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전기,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미장시설, 기타공사 시설물,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 등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인 당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 될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 계약자가 직접 문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지며, 이에 관하여는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입주자로 선정(3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시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록,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예정으로 사진 및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디자인계획은 고양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샷시 및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 본인의 판단 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샷시 및 인테리어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실내습도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기본형세대(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세대(비확장세대)로 선택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휘트니스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관리는 입주자에 의합니다.
• 대한주택보증(주)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송택지개발지구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삼송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삼송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샷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 삼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송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선택시 비확장 발코니는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로 인해 벽체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대피공간 제외)
• 각동 모두에 계획된 2개층 피로티가 보행통로로 이용될 수 있어 피로티 주변세대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사업부지 북측으로 공릉천 및 도로측으로 통일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1번국도 (통일로)에서 단지내로 직접 진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이(고등학교:개교예정시기 16개월전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삼송택지내 학교설립은 불가피하게 지연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삼송택지지구내 학교 설치계획은 관할 교육청 학교설치 계획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약 0.4km지점(서울 외곽고속도로 건너편)에 레미콘 공장 및 서울 장묘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분묘 와 북측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삼송 택지개발지구내 남단(단지 남측 약 5km지점)에 환경자원시설(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바이오매스 시설)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향후 악취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삼송 택지개발지구내 남단 전기공급설비시설 용지에 송전철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삼송 택지개발지구 서측 인근에 군부대 사격장 관련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삼송 택지개발지구 동측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 고양 원흥지구 남측 약2.5km 지점에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수색비행장)이 있어 항공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삼송택지지구) 인근에 골프장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 비상시에 일부 옥상공간이 전투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진입로는 1번국도(통일로)에서 직접 차량 진출입이 불가 하며 삼송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상 보행자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사업의 입주시기는 삼송택지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 · 하수도, 학교 등)이 완료된후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반시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입주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삼송택지지구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및 방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사업지 입주시기에 일괄적이고 통일된 번호(마을명등)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외부시설물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외에 근린생활시설등 일체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 진출입구 및 옥외 주차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상에서 설치되는 환기용 그릴 및 채광용 Top-Light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진출입시 일부 저층세대의 소음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 광장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고, 우 · 오수, 상수관로의 분기 등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변경 등으로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택지개발지구로서 택지준공의 지연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현황을 살피시고 주변에 상황의 착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회 사	감리금액(원)	비 고
건 축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1,625,186,195	
전 기	(주)신화에프이원	406,989,816	
소 방	석우엔지니어링(주)	87,780,000	
통 신	경기엔지니어링(주)	70,950,000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포함)까지	235,270,720,000원	제 01282009-101-0011300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대상 제외사항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권자 및 분양권을 양수한 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법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규정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음.
• 인정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정일자 : 2009년 11월 11일 • 인정번호 : 2009-051
*인정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점수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4	3점
	중량충격음			4	3점
	화장실 소음			2	9점
	경계소음			1	9점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2	5점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주거전용부분		4	3점
		공용부분		4	3점
	내구성			3	3점
환경관련 등급	조경(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2	5점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2	5점
	일조(빛환경)			3	4점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1	9점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2	8점
	에너지성능(열환경)			3	8점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1	5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주거전용부분		3	3점
		공용부분		1	5점
화재 · 소방등급	화재 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	3점
		배연 및 피난 설비		3	3점
		내화 성능		3	3점
총 점					99점

■ 분양가 내역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다음 항목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시해야함.
 ①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②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③ 아래 항목별 금액은 추정가격으로 준공시 소요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294,088,612		건축	지붕 및 홈통공사	498,617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15,452,480			창호공사	5,888,533	
	기간이자	10,604,572			유리공사	1,842,355	
	필요적 경비	6,252,076			타일공사	6,015,905	
	그밖의 비용	606,299			돌공사	2,460,433	
토목	토공사	1,898,431			도장공사	2,102,290	
	흙막이공사	3,802,827			도배공사	2,753,201	
	비탈면보호공사	-			수장공사	1,463,104	
	옹벽공사	306,444			주방용구공사	2,410,879	
	석축공사	-			잡공사	1,956,615	
	우 · 오수공사	1,154,960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1,881,149	
	공동구공사	-			급탕설비공사	413,273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1,344,174	
					위생기구공사	2,595,734	
	도로포장공사	258,174			승강기계공사	1,875,499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난방설비공사	1,936,318	
	정화조시설공사	-			가스설비공사	837,601	
	조경공사	3,641,745			자동제어설비공사	94,685	
건축	부대시설공사	291,340			특수설비공사	2,566,484	
	공통가설공사	3,650,726		그밖의 공종	전기	8,321,388	
	가시설물공사	2,372,178			정보통신	3,095,484	
	지정 및 기초공사	1,241,759			소방설비	6,140,345	
	철골공사	-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3,231,343	
	철근콘크리트공사	44,340,406			이윤	2,045,927	
	용접공사	-		간접비	설계비	750,000	
	조적공사	1,470,493			감리비	2,190,906	
	미장공사	4,191,026			일반분양시설경비	3,529,063	
	단열공사	476,726			분담금 및 부담금	1,003,867	
	방수 · 방습공사	1,914,602			보상비	-	
	목공사	1,540,311			기타 사업비성 경비	-	
	가구공사	6,246,469		그밖의 비용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9,014,337	
	금속공사	2,115,047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시행자 : 현대산업개발(주) (서울특별시-주대2003-041) • 시공자 : 현대산업개발(주) (서울특별시-주대2003-041)

■ 인터넷 분양사이트 : www.i-park.com/ ■ 견본주택 위치도 첨부

■ 분양문의 : 견본주택 ☎1577 - 155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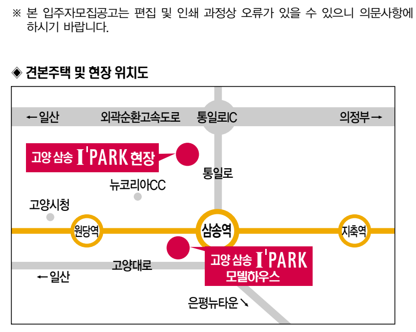

분 양 문 의

1577-1551

시행자 및 시공자

현대산업개발